

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

2003 . 9 . 19

시민행정위원회 전문위원

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2003년 9월 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.

I. 폐지이유

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규정된 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었으므로 1998년 12월 4일 설치된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II. 주요골자

○서울특별시종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함.

III. 검토의견

1. 폐지조례 배경

2003년 6월 2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(대통령령 제18003호)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(총리훈령 제441호)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었다는 통보가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.

2. 조례의 폐지방식

현행 조례의 폐지방식에는 일반적으로 ①새로 당해 조례의 폐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과 ②새로 개정 또는 제정하는 조례의 부칙에 폐지규정을 두는 방식, ③한시법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당해 조례의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미리 설정하여 그 기간의 경과로 폐지하게 하는 방식이 있는 바, 이 폐지조례안은 위 1항과 같은 방식으로 폐지하는 것입니다.